

제2장 상품 무역

제1절 상품에 대한 일반규정 및 시장접근

제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자의 상품이 수출 당사자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자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나.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 1)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2)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또는
- 3)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다. **상품의 관세가격**이란 수입된 상품에 종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의 가

격을 말한다.

라.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마. 수입허가절차란 수입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통관목적에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그 수입 당사자의 관련 행정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바. 원산지 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상품을 말한다.

제2.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자들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2.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

각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그 밖의 당사자들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신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당사자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그 당사자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다른 당사자들의 원산지 상품은 수입 당시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 당시에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상품에 대하여 지불한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제4.5조(투명성) 제1항나호에 더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의 모든 개정과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최신 관세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일 내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2.5조 관세 양허의 가속화¹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들이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그들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가속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제20.4조(개정)에 따라 이 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 둘 이상의 당사자들²은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그들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개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관세 양허를 가속화 또는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당사자들 간 합의는 제20.4조(개정)에 따른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그들의 양허표에 대한 수정을 통하여 이행된다. 관세 양허의 그러한 모든 가속화 또는 개선은 모든 당사자들에 확대된다.

3. 당사자는 언제라도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일방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이 협정상 관세 양허에만 적용된다.

² 이 항의 목적상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란 당사자들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말한다.

적으로 가속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관세 양허의 그러한 모든 가속화 또는 개선은 모든 당사자들에 확대된다. 그러한 당사자는 새로운 특혜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실행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알린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에 언급된 당사자의 관세 양허의 일방적 가속화 또는 개선 후, 그 당사자는 해당 연도에 대하여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에 규정된 특혜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자신의 특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한 당사자는 새로운 특혜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그러한 날 전, 실행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알린다.

제2.6조 관세 차별

1. 관세 차별³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은 수입 당시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수입 당사자의 양허표에 규정된 그 수입 당사자의 관세 양허에 따라 수출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자격을 가진다. 다만, 그 수출 당사자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이어야 한다.

2.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는 그 상품이 제3.2조(원산지 상품)에 따라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이다. 제3.2조(원산지 상품) 나호와 관련하여,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이다. 다만,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생산 공정이 그 수출 당사자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자가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 부록에 적시한 원산지 상품의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는 그 상품이 그 부록에 명

³ 당사자들은 “관세 차별”이 수입 당사자가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상이한 관세대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시된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수출 당사자이다.

4. 원산지 상품의 수출 당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그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에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이다. 그러한 경우, 그 원산지 상품은 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가진다.

5. 제2항의 목적상, “최소공정”은 아래에 규정된 공정이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운송이나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다. 체질, 감별,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된 단순한⁴ 공정

라.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사. 동물의 도살⁵

아.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⁴ 이 항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기술한다.

⁵ 이 항의 목적상,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을 말한다.

자.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차.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또는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 언급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6.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자는 수입자에게 다음 중 하나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자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자들로부터의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다만,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산지 재료는 최종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신청에서 고려된 원산지 재료만을 지칭한다. 또는

나. 수입 당사자가 당사자들로부터의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7. 제20.8조(일반 검토)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3년 마다 또는 당사자들 간 합의하는 대로 이 조의 요건과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당사자 양허표의 부록에 규정된 세번의 수 및 조건을 줄이거나 철폐하기 위하여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 부록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이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이 부록의 추가요건을 포함하여 자신의 부록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개정은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제20.4조(개정) 및 제20.9조(가입)에 따라 발효한다.

제2.7조

상품 분류

당사자들 간 무역에서의 상품 분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한다.

제2.8조

관세 평가

당사자들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제1부 및 부속서 I의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2.9조

통과 중인 상품

각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5조제3항과 「무역원활화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자로부터 또는 다른 당사자로 통과 중인 상품의 통관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한다.

제2.10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다음의 상품의 경우, 그러한 상품이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조건부로 면제받고 자신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나.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인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경우

2. 각 당사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신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무관세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자도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다른 당사자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신의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자가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자의 영역으로 달리 반입 가능

할 것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신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⁶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2.11조

컨테이너 및 팔레트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 또는 자신이 당사자인 관련 국제 협정 규정에 규정된 대로, 국제 운송에서 상품의 선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컨테이너와 팔레트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이 조의 목적상, “컨테이너”란 운송기기(리프트 반, 가반탱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조물)의 품목을 말한다.

- 1) 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격실을 형성하도록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 2) 항구적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반복 사용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견고한 것
- 3) 도중에 재적재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상품의 수송이 용이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

⁶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통관 항구”란 국제 통관 항구를 말한다.

- 4) 특히,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길 때 용이하게 취급 되도록 설계된 것
- 5) 적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 그리고
- 6) 1m³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컨테이너”는 그 컨테이너의 해당 유형에 적합한 부속품 및 기기를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품 및 기기가 그 컨테이너와 함께 운송되어야 한다.

“컨테이너”는 차량, 차량의 부속품이나 예비부품 또는 포장이나 팔레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착탈식 본체”는 컨테이너로 간주된다.

나. 이 항의 목적상, “팔레트”란 기계식 장치의 도움으로 단위 화물을 운송하거나 취급 또는 적재할 목적으로 다량의 상품이 단위 화물을 형성하도록 조립될 수 있는 데크 위의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는 받침대로 분리된 두 개의 데크 또는 발로 지탱되는 하나의 데크로 구성된다. 팔레트의 전체 높이는 포크리프트 트럭 또는 팔레트 트럭에서 취급하는 것과 호환 가능한 최소 높이로 감소된다. 이 장치는 상부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 반입이 허용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8장(서비스 무역) 및 제10장(투자)을 조건으로⁷

가.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자신의 영역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제17.12조(일반적 예외) 또는 제17.13조(안보 예외)에 따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⁸

나. 어떠한 당사자도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 어떠한 당사자도 컨테이너가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담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자신의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당사자의 영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2.12조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에 대하여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제2.13조

농업 수출 보조금

1. 당사자들은 농산물에 대하여 예정된 수출 보조금 권리의 철폐를 포함한 2015년 12월 19일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수출 경쟁에 관한 2015년 12월 19일 각료회의 결정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속도로 및 철로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당사자가 통관 항구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장소에서 컨테이너가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가 나가는 것이 가능한 항구의 목록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할 수 있다.

(WT/MIN(15)/45, WT/L/980)」에서 한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2. 당사자들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의 다자적 철폐의 목표를 공유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수출 보조금의 재도입을 막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2.14조 관세 양허표의 변경

각 당사자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 수정 후 개정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에서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의 변경이 부속서 I(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손상시키지 않고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제2.15조 양허의 수정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관세 양허를 이행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밖의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안하는 당사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 알리고 어떠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상에 참여한다. 그러한 협상에서 자신의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안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협상 전에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그 밖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무역에 불리하지 않은 상호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양허의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한 협상은 그 밖의 상품에 관한 보상조정을 포함할 수 있다. 모든 보상조정을 포함한 상호 합의된 협상 결과는 제20.4조(개정)에 따라 부속서 I(관세 양허표)에 반영된다.

제2절 비관세조치

제2.16조 비관세조치의 적용

1.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이 협정상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의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허용된 자신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당사자들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2.17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의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쿼터, 수입이나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자가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가.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알리거나,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공표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제2.18조

비관세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

1. 당사자는 자신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에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 조치 및 그 조치가 기술적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요청당사자” 라 한다)와 요청을 받은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피요청당사자” 라 한다) 간 무역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려사항을 분명하게 적시한다.

2. 그 조치가 다른 장의 적용을 받는 경우, 요청당사자와 피요청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협의 당사자들” 이라 한다)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 장에 규정된 협의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요청당사자는 협의 당사자들 간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요청으로부터 180일 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서면 요청의 접수로부터 60일 내에 요청당사자에 응답하고 기술적 협의를 개시한다. 기술적 협의는 협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4.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적 협의 요청은 그 밖의 모든 당사자들에 회람된다. 다른 당사자들은 그 요청에 명시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기술적 협의에 대한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당사자의 참여는 협의 당사자들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협의 당사자들은 그러

한 요청을 충분히 고려한다.

5. 요청당사자는 긴급하거나 부패성 상품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것 보다 짧은 기한 내에 기술적 협의가 개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요청당사자로서든지 또는 피요청당사자로서든지 관계 없이, 이 조에 따른 기술적 협의의 사용에 대하여 상품위원회에 연례 통보서를 제출한다. 이 통보는 협의의 진전사항 및 결과의 요약을 포함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른 기술적 협의는 제19장(분쟁해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2.19조

수입허가절차

1. 각 당사자는 모든 자동 및 비자동 수입허가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자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신속하게 자신의 기존 수입허가절차를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수입허가협정」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가 「수입허가협정」 제4조에 규정된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위원회"라 한다)에 「수입허가협정」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정보와 함께 그 절차를 통보한 경우, 그리고

나. 「수입허가협정」 제7조제3항에 기술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연례 질의서에

대한 응답으로 당사자가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가장 최근의 연례 답변에서, 그러한 기존 수입허가절차에 관하여, 그 질의서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각 당사자는 모든 새로운 수입허가절차 및 자신이 행하는 기존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모든 수정을 가능한 한도에서 그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자신의 공표일 후 60일 내에 통보한다. 이 항에 규정된 통보는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당사자가 새로운 수입허가절차 또는 기존 수입허가절차의 수정에 대하여 「수입허가협정」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모든 새로운 또는 수정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자는 그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을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자는 그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이 발효하기 최소 21일 전에 그렇게 한다.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구되는 그 통보는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6. 제3항에 따른 통보는 그 통보의 대상인 모든 절차에 따라 다음을 명시한다.

가. 어떠한 생산품에 대한 수입허가 조건이 그 제품의 허용 가능한 최종 이용자를 제한하는지 여부, 또는

나. 당사자가 어떠한 상품의 수입허가 취득 자격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과하는지 여부

1) 산업협회 내 회원자격

- 2) 수입허가 요청에 대한 산업협회의 승인
- 3) 그 생산품 또는 유사한 생산품의 수입 이력
- 4) 수입자 또는 최종이용자의 최소 생산능력
- 5) 수입자 또는 최종이용자의 최소 등기자본금, 또는
- 6) 수입자와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유통업자 간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

7. 각 당사자는 수입허가의 부여 또는 거부 시 자신의 각자의 허가 당국에 의하여 이용되는 기준에 관한 다른 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60일 내에 답변한다. 수입 당사자는 그 밖의 당사자들 및 무역업자들이 수입허가의 부여 또는 할당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표한다.

8. 수입허가를 위한 어떠한 신청서도 신청서에 포함된 기본 정보를 변경시키지 않는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로 거절되지 않는다.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는 여백의 넓이 또는 사용된 글꼴과 같은 형식 오류 및 거짓 의도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없는 철자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9.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2.20조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수입 또는 수출 관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 부과금에 상당하는 부과금,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 관세는 제외한다)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신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 사항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그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통관서류가 수입당사자의 해외 대리인이나 수입당사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보증, 인증되거나 달리 열람되거나 승인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21조

분야별 이니셔티브

1. 당사자들은 분야별 사안에 관한 작업 계획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그러한 작업 계획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상품위원회가 이를 수립하고 감독한다. 당사자들은 작업 계획의 개시 후 2년 내에 그러한 작업 계획을 완결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안한 그러한 분야 또는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러한 작업 계획에 포함될 분야에 대하여 합의한다.

3. 이 조에 따라 개시되는 모든 작업 계획은 다음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 그 사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 증진

나. 기업 또는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촉진, 그리고

다. 무역을 원활히 할 당사자들의 가능한 조치에 대한 탐색

4. 이 조에 따라 개시된 모든 작업 계획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품위원회는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